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노사 443-10P6		(전화번호 725-7927)	전건규정	조항 전건사항
처리기간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opacity: 0.5;"> 82.9.10 9.10 </div>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					
보조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보조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기안책임자	최병철	82.9.3 (전병철)	조	결재	2128
경유	과안참조	발신	발신	발신	발신
수신	과안참조	발신	발신	발신	발신
참조	과안참조	발신	발신	발신	발신
제목	서울특별시 책비서관리 및 처분규정중 개정				
(제1안) 내부검정					
1. 서울특별시 약규 제411호로 개정 공문한 서울특별시 책비서관리 및 처분규정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역					
1) 책비처 매각 매입 잔액이적용 (년 27% - 년 20%로 인하)					
첨부	개정안 모의, 개정의유, 개정안, 개정대비문 각1부.				결
(제2안)					
수신 공보관					
제목	서울특별시 책비서관리 및 처분규정중 개정 규정 개정내역				관인
1. 서울특별시 책비서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 하던바 의뢰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개정안 1부.				결.

改正要旨

1. 替費地賣却代金延滯利率引下
(27% → 20%)

<改正理由>

1. 利率引下

市中銀行金利引下

- 貸出：年 14% → 10%
- 延滯：年 22% → 18%

2. 一般市有財産 (附 1. 6.)

年 27% → 20% 引下

不動産景気沈滞に對し歳入確保

に實需要者賣却誘導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替費地 管理 및 処分 規程中 改正

서울특별시 替費地 管理 및 処分 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第14条 第2項 第1号中 "納付日까지 年 27%" 를 "納付日까지 年 20%" 로 한다.

第14条 第3項 第1号 및 第2号中 "年 2割 7分" 을 "年 2割" 로 한다.

附 則

- (1) 이 規程은 1982. 9. 10. 부칙 施行 한다.
- (2) 이 規程 施行 以前에 이미 契約 完了 또는 賣却한 替費地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程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전기의 관리 및 적분규정중 개정

서울특별시 전기의 관리 및 적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1호 중 "납부일까지 연 27%"를 납부일까지 연 20%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중 "년2할 7분"을 년2할로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2. 9. 10. 부터 시행한다. 1982. 9. 09. 시장
-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완료 또는 체결한 계약서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서습부담서 책비세 관리 및 기본금 규정 (안)

.....

현	비
<p>제16조 지방 세외</p> <p>비과세금 일체금 기관은 10일음 경과하지 못한다.</p> <p>이안, 읍 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경지인도 부의 납부원</p> <p>감지 년 7%의 연체 이체금 기관 납부 하여야 하며, 2%의 경과지연</p> <p>.....</p>	<p>제16조 지방 세외</p> <p>비과세금 일체금 기관은 세금 부과하지 못한다.</p> <p>이안, 읍 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관은 그 부과한 부의 납부원</p> <p>.....</p>
<p>제17조 지방 세외</p> <p>비과세금 납부도 분납할 경우에는 원취권으로 과외액 초과금 1항과 비과</p> <p>세금의 3% 이상을 정회 분입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고 잔액은 납부 기관</p> <p>.....</p>	<p>제17조 지방 세외</p> <p>비과세금 납부도 분납할 경우에는 원취권으로 과외액 초과금 1항과 비과</p> <p>세금의 3% 이상을 정회 분입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고 잔액은 납부 기관</p> <p>.....</p>
<p>제18조 지방 세외</p> <p>비과세금 납부 연체액 있을 때는 연체할 7%의 연체 이체금 영수 하여야</p> <p>.....</p>	<p>제18조 지방 세외</p> <p>비과세금 납부 연체액 있을 때는 연체할 7%의 연체 이체금 영수 하여야 한다.</p>

< 별지 제 7 호서식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채 비 지 대 각 공 고

1. 매각재산의 표시

지 구 명	총필지수	면 적	최저·최고면적	매 각 재 산 위 치

2.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3. 입찰 및 등록장소: 당시 도시계획국 입찰실

4. 입찰방법: 일반공개 경쟁입찰

5.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의 1 할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 전일 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6 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년 20 %의 금리율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연장기간 6개월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
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7. 낙찰자의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세 및 국세 납세필증을
제출하고 매매제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미달: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10 미만인 때

나. 기재착오: 구획번호나 예정면적등 주요기재사항이 틀렸거나 기
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9. 제비지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상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명도제 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아니하오니 현장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1. 관계도면 및 재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
였으나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도시행정과(75-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

서울특별시강

< 별지 제 8 호서식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채 비 지 대 각 공 고

1. 매각재산의 표시

지 구 명	총 필 지 수	면 적	최저·최고면적	매각재산위치

2. 입찰등록 및 등록일시

3. 입찰 및 등록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 입찰실

4. 입찰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5. 시장용지 입찰자격

시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또는 낙찰 후 60일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 전일 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시장 시설보증금납부

시장용지 낙찰자는 낙찰액의 2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시설보증금으로 잔금 납부전일까지 관할구청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8.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년 20%의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 6개월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라. 시장용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일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9. 낙찰자의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세 및 국제납세필증을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됩니다.

10. 입찰무효: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미달: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10 미만인 때

나. 기재착오: 구획번호나 예정년척등 주요기재사항이 틀렸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11. 체비지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상,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 명도에 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아니하오니 현장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3. 관계도면 및 재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도시행정과(725-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

서울특별시

-25-

1294

<별지제 16호서식>

수입인지

매 매 계 약 서

확 인	담당	계장	과장

대강초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지구 구획 호

채비지대정면적 평 곱

2. 매 도 대 금: 총 액 —금 원정부

3. 계약보증금: —금 원정부

4. 대금납부일자: 서기 198 년 월 일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서울특별시강을(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을(을)이라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서경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서기 198 년 월 일

매도인(갑): 서울특별시

 위대부 시장

④

매수인(을): 서울특별시 구 등 번지

 성 명

계 약 약 정 조 항

제 1 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 조 본계약 재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아래 자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본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 2. 본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 3. 본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3 조 을이 전 제 2 조를 위반하였거나 위 매도대금을 대금 납부 인자에 납부치 못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해약되지 아니 하였을때는 매도대금 총액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년 2 할의 연체로문 연체기간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납부기간의 연장은 계약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본계약 약정 전 2, 3 조를 을이 위반하여 해약되었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의 소득으로 한다.

제 5 조 매각토지 면적은 원지매정지도 지정된 면적으로서 강차 한 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감이 생하여도 물론 하등이 의를 할 수 없다.

제 6 조 갑은 본계약 재산에 부수된 철거 및 명도에 관한 것

토지관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울이 매도 대금을 완납한 후에 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울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매각토지의 지적증, 감이 있을때의 정산은 환지처분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② 증명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 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년 20%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제 8 조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울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에게 결정권이 있다.